

대구지방법원 2023. 8. 22 선고 2022가단14210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신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에스, 담당변호사 윤경진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경원

변 론 종 결 2023. 7. 11.

판 결 선 고 2023. 8. 2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
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망 C(1999. 11. 5. 사망)의 자녀이고, 망 C은 망 D(2004. 2. 22. 사망)의 자녀이며, 피고는 망 D의 또 다른 자녀인 망 E의 자녀이다.

나. 원래 망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, ①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00. 2. 18. 접수 제2806호로 1999. 11. 5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상속등기’라 한다)가 마쳐졌고, ② 같은 등기소 2000. 2. 18. 접수 제2807호로 2000. 2. 18. 증여를 원인으로 한 망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제1증여등기’라 한다)가 마쳐졌으며, ③ 같은 등기소 2004. 3. 4. 접수 제4935호로 2004. 3. 4.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제2증여등기’라 한다)가 마쳐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4, 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망 C의 동생인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등1)에 관한 상속등기 신청사무를 위임하면서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와 함께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을 뿐인데, F은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망 D에 대한 이 사건 제1증여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제1증여등기는 원인 무효이고, 이 사건 제1증여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망 D의 사망 이후 일자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제2증여등기 역시 원인 무효이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1)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

추정되므로,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(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9다65462 판결 등 참조).

2) 우선, 이 사건 제1증여등기가 원인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,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,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상속등기 신청사무를 위임받은 F이 직접 원고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법무사에게 이 사건 제1증여등기 신청사무도 함께 위임하여 이 사건 제1증여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,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F은 적어도 망 D으로부터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를 전달받고 이 사건 제1증여등기 신청절차를 진행하였고, 망 D은 망 C의 상속인인 원고 및 원고의 모친과 협의한 후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, 이 사건 상속등기와 이 사건 제1증여등기의 신청은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졌고, 원고는 등기가 모두 완료된 직후 F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제1증여등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, 원고는 이 사건 제1증여등기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났을 무렵 망 D이 사망하자 같은 해 10.경 비로소 이 사건 제2증여등기의 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바, 이는 원고가 수 년 동안 이 사건 제1증여등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,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사주재자에게 최종적으로 증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던 망 D의 뜻을 그의 생존기간 동안에는 차마 거스르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증여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이 사건 제1증여등기가 등기의무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 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3) 따라서 이 사건 제1증여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상인

(별지)

부동산의 표시

1. 경복 칠곡군 답 1408㎡
2. 경복 칠곡군 답 2169평방미터
3. 경복 칠곡군 대 496㎡
4. 경복 칠곡군 대 3㎡
5. 경복 칠곡군 전 1302

1) 이 사건 각 부동산, 경북 칠곡군 G 답 499㎡, H 답 1,464㎡